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구단70738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피 고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정○○
변 론 종 결	2023. 5. 26.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9. 9.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3. 25.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1. 4. 15. B, C와 사이에 B, C로부터 ○○ ○○구 D 대 739.2㎡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로 출자받고 그 가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배정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 C는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7,152,844,350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은 뒤 춘천지방법원 2021비합12호로 신주발행조사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7. 9. 현물출자에 관한 위 감정평가서를 인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1. 7. 9. B은 원고의 주식 362,975주를, C는 2,449,868주를 각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2021. 7. 21. 변경원인일을 법원의 인가 다음 날인 2021. 7. 10.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에서 2,822,843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고, 원고의 계정별 원장의 차변에는 '2021. 7. 21. 건물 278,284,350원', '2021. 7. 21. 토지 6,874,56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21. 7. 21.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286,352,050원, 지방교육세 28,635,200원, 농어촌특별세 14,317,600원을 각 신고하고, 2021. 8. 4. 위 각 금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완납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 8. 12. B, C와 사이와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하고, 2021. 9. 2. 피고에게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사. 피고는 2021. 9. 9.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의한 취득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하였으나 2021. 12. 21.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8.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B, C와 원고는 2021. 8. 12.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당초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아가 2021. 8. 20. 폐업하고, 2022. 1. 10. 해산등기까지 마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1호는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현물출자계약이 성립하고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현물출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계약해제와 관련된 취득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보건대, 2021. 7. 9. 법원으로부터 현물출자에 관한 위 감정평가서를 인가받은 뒤 B이 원고의 주식 362,975주를, C가 2,449,868주를 각 인수한 사실, 원고는 2021. 7. 21. 변경원인일을 법원의 인가 다음 날인 2021. 7.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10.로 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10,000주에서 2,822,843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완납한 사실, 원고의 계정별원장의 차변에는 '2021. 7. 21. 건물 278,284,350원', '2021. 7. 21. 토지 6,874,560,000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원고는 2021. 7. 21.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 따라 B,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법인장부인 계정별원장에 의해 그 취득가격이 증명되므로, 원고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21. 7. 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사실상의 취득에 따른 원고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8. 12.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합의해제하여 당초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그 후 합의에 의하여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88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계약해제와 관련된 취득예외조항은 이 사건과 같이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판사 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관 계 법 령

■구 지방세법 (2021. 12. 28. 법률 제1865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1-02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끝.